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29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김현우(공판)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23.경 피해자 B의 아들 C에게 12,700,000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권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3. 10:25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



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C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_____